H - 220 - 2023

사업장 공기매개 신종감염병 예방지침

2023. 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기술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의 요구사항을 이행하는데 참고하거나 사업장 안전·보건 수준향상에 필요한 기술적 권고 지침임

### 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

- 작성자 : 을지대학교 최은희
- 제·개정 경과
- 2023년 4월 산업의학분야 기준제정위원회 심의(제정)
- 관련규격 및 자료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 관련 사업주 조치 사항에 관한 연구. 2022
- 정태종.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내용과 개선방안. 한국법 학회. 2020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신종감염병 발생 사업장 대응체계 개선-코로나19 사례를 중심으로. 2021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사업장 공기매개 감염병 확산 방지 지침. 2016
- 관련법규·규칙·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94조(감염병 예방 조치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95조(유해성 등의 주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1조(예방조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2조(노출 후 관리)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장 감염 전파의 차단 조치
- 기술지침의 적용 및 문의
- 이 기술지침에 대한 의견 또는 문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www.kosha.or.kr)의 안전보건기술지침 소관 분야별 문의처 안내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동 지침 내에서 인용된 관련규격 및 자료, 법규 등에 관하여 최근 개정 본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개정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표일자 : 2023년 6월 29일

제 정 자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 사업장 공기매개 신종감염병 예방지침 제안개요

#### I. 제정이유

2020년 3월 구로 콜센터에서 COVID-19 집단감염 발생을 시작으로 물류센터, 의료기관, 3밀 사업장, 외국인이 많은 사업장 등 많은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하였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의 감염병 관련 범위는 병원체 노출될 위험이 있는 사업장에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이 지침은 사업장의 공기매개 신종감염병 유행 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장(병원체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적용이 제외되는 사업장의 작업자를 보호하는 등 감염병 예방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한다.

#### Ⅱ. 제정(안)의 주요내용

- 1. 공기매개 신종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에 따른 지침 적용
- 2. 사업장 특성에 맞는 예방체계 마련
- 3. 신종감염병에 대한 사업장의 위험성 평가
- 4. 의심증상 모니터링, 유증상자, 확진환자 등 발생 관리 등

#### Ⅲ. 관련 법규 및 규격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94조(감염병 예방 조치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95조(유해성 등의 주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1조(예방조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2조(노출 후 관리)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장 감염 전파의 차단 조치

#### Ⅳ. 산업안전·보건표준제정위원회 심의개요

- 제 안 자 : 을지대학교 최은희

- 심 의 일 : 2023년 4월 6일

심의위원: 재적위원 14명 중 8명 참석(수정 후 찬성 8명)

- 주요 수정내용 : 신종감염병 위기경보 수준별 구분, 자구 수정 등

# 목 차

제1장 일반사항1
1. 목적1
2. 적용범위1
3. 용어의 정의1
4. 신종감염병 위기경보 수준3
5. 지침 적용방법3
제2장 신종감염병 위기경보'관심'단계4
1. 사업장 특성에 맞는 예방체계 마련4
제3장 신종감염병 위기경보 '주의'단계5
1. 위험성 평가5
2. 의심증상 모니터링 및 유증상자·확진환자 등 발생 관리7
3. 위생 및 청결·소독 등 방역 관리7
4. 유연근무 및 휴가
제4장 신종감염병 위기경보 '경계'단계9
1. 의심증상 모니터링 및 유증상자·확진환자 등 발생 관리9
2. 위생 및 청결·소독 등 방역 관리9
3. 회의·교육, 출장·모임 등 관리10
4. 사무공간 및 구내식당·휴게실 등 관리11
제5장 신종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12
1. 의심증상 모니터링 및 유증상자·확진환자 등 발생 관리12
2. 위생 및 청결·소독 등 방역 관리13
3. 회의·교육, 출장·모임 등 관리14
4. 사무공간 및 구내식당·휴게실 등 관리14

## 사업장 공기매개 신종감염병 예방지침

### 제 1 장 일반사항

#### 1. 목 적

이 지침은 사업장의 공기매개 신종감염병 유행 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장(병원체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적용이 제외되는 사업장의 작업자를 보호하는 등 감염병 예방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감염병 예방을 위한 인프라 및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감염병 예방, 감시, 조기발견 등 사업장 내 작업자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사업주가 이행하는 것으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장 적용 사업장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포함, 이하 '작업자'라고 한다)에게 적용하도록 한다.

### 3. 용어의 정의

-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가) "공기매개 감염병"이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Coronavirus disease -2019 (코로나19) 등과 같이 공기 또는 비말핵 등을 매개로 호흡기를 통하여 전염되는 감염병을 말한다.
  - (나) "신종감염병"이란 최근 20년 동안 발생이 증가했거나 가까운 미래에 발생이 증가하여 국민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감염병을 말한다. 이 지침에서는 신종 감염병 중 공기매개 감염병을 대상으로 한다.
  - (다) "신종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이란 위기징후 식별 및 위기예상시 위험수준과 발생 가능성 등을 판단, 대응할 수 있는 정보 제공 및 경고하는 것을 말하며 4단계로 구분한다.
    - ① '관심'단계: 위기징후와 관련된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나 그 활동수준이 낮아서 국가위기로 발전될 가능성이 낮은 상태
    - ② '주의' 단계: 위기정후 활동이 비교적 활발하고 국가위기로 발전될 수 있는 일정 수준의 경향성이 나타나는 상태

#### H - 220 - 2023

- ③ '경계' 단계: 위기징후 활동이 활발하고 국가위기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
- ④ '심각' 단계: 위기징후 활동이 매우 활발하고 전개속도, 경향성 등이 심각한 수준 으로서 국가위기 발생이 확실한 상태
  - \* 출처: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관련 매뉴얼('23.5.2. 기준)
- (라) "잠복기"란 병원체가 생체 내에 침투하여 감염을 일으켜서 발병하기까지 기간을 말한다.
- (마) "사회적 거리두기"란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사람 간 접촉을 줄이는 것으로 이 지침에서는 직장에서의 개인행동지침을 말한다.
- (바) "위험성평가"란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 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 지침에서는 감염병에 대한 사업장 점검표를 활용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 (사) "보호구" 란 공기매개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자의 신체 일부 혹은 전부를 착용하는 각종 보호장구를 말한다.
- (아) "확진환자"란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이 확인된 자를 말한다.
- (자) "의사환자"란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신종감염병 최대 잠복기 내에 감염병 임상 증상이 나타난 자를 말한다.
- (차) "조사대상 유증상자"란 아래의 3개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감염병 임상증상으로 감염병이 의심되는 자
  - ②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최대 잠복기 내에 감염병 임상증상을 보이는 자
  - ③ 감염병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어 진단검사가 필요한 자
- (카) "기능연속성계획(BCP, Business Continuity Planning)"이란 위기상황에서도 사업장의 핵심기능(업무)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계획을 말한다.
- (타) "방역관리자"란 신종감염병 위기경보 발령 시 사업장 내 신종감염병의 예방 및 확산 방지 업무 수행을 위한 사업주의 업무를 보좌하는 자를 말한다.
- (파) "방역관리부서"란 신종감염병 위기경보 발령 시 사업장 내 신종감염병의 예방 및 확산 방지 업무 수행을 위한 사업주 및 방역관리자의 업무를 보좌하는 부서를 말한다.

KOSHA GUIDE H - 220 - 2023

(2)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관련 고시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 4. 신종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감염병에 대한 위기정후를 감시하고 위기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질병관리청은 상황 판단회의(자체위기평가회의)를 통해 위기경보를 발령한다. 위기경보는 위기정후 식별 및 위기예상 시 위험수준, 발생가능성 등을 판단하고 그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경고하는 것으로, 4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로 구분한다.

※ 위기경보 수준 확인: 질병관리청 누리집(kdca.go.kr) → 알림·자료 → 보도자료

<표 1> 신종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에 따른 위기유형

관심(Blue )	주의(Yellow)
- 해외에서의 신종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 -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의 발생	- 해외에서의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 -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의 제한적 전파
경계(Orange)	심각(Red)
- 국내 유입된 해외 신종감염병의 제한적 전파 -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	_ 서파 또는 서국선 와사

### 5. 지침 적용방법 ※ 질병관리청 등 보건당국의 지침을 우선 적용

해당 지침은 신종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별 조치사항을 기술한 것이며, '관심'에서 '심각' 단계로 진행될 때 이전 단계의 조치사항을 누적하여 적용한다.

<표 2> 지침 적용방법

	위기경보 구분	관심	주의	경계	심각
	'관심'단계(제2장)	제2장	ᅰ╸╶┸		
지 Ω	'주의'단계(제3장)		제2~3장	제2~4장	제2 도자
적용	'경계'단계(제4장)				제2~5장
	'심각'단계(제5장)				

### 제 2 장 신종감염병 위기경보 '관심' 단계

#### 1. 사업장 특성에 맞는 예방체계 마련

#### 1.1 방역관리부서 구성 및 방역관리자 지정

- (1) 사업장의 신종감염병의 예방 및 확산 방지 업무를 수행할 담당부서(방역관리부서) 및 담당자(방역관리자)를 지정한다. 방역관리자는 인원별, 층별, 구역별, 조직 구성별 (실·센터별) 등 사업장 상황에 맞게 적정한 인원을 지정한다.
- (2) 질병관리청 등 정부부처의 지침에 따라 각 사업장에 적합한 방역지침을 마련한다.
- (3) 의심환자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보건소 및 의료기관(선별진료소, 이송 병원 등)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한다.(사내 부서, 외부 거래처 연락망 등 포함)
- (4) 보건당국의 예방접종 지침·가이드에 따라 접종이 권고되는 경우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관리한다.

#### 1.2 지속적 업무수행을 위한 준비

- (1) 신종감염병 확산 상황에서도 사업장의 주요 핵심 기능(업무)가 지속될 수 있도록 주요 인력, 기술 등 현황을 파악하여 '기능연속성계획(BCP)'을 수립한다.
- (2) 기능연속성계획(BCP)을 수립 시에는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발생에 따른 결근 등을 고려해야 한다.

#### <표 3> 기능연속성계획(BCP) 주요 내용

① 비상조직체계 구성 및 역할분담	비상시 체계적인 대응 및 의사결정을 위해 비상조직체계를 구성하고, 팀별·개인별 역할을 규정
② 사업장 핵심업무 정의 및 연속성계획 수립	사업장 자체 특성에 따라 반드시 지속해서 수행하여야 하는 핵심업무를 선정하고 우선 순위에 따라 체계적인 핵심기능 연속성 계획(BCP)을 마련함. 계획 실행 시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야 혼란을 최소화 함.
③ 가용자원 현황 파악	사업장이 보유하고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의 현황을 파악
④ 인력운영 방안 마련	확진환자 등 발생에 따라 인력 부족 시 핵심기능(업무) 지속 방안을 마련
⑤ 소통 체계 구축	사업장 내외부와의 소통체계를 유지하여 기능연속성을 높임. 직원, 고객, 거래처, 하청업체 등 내·외부 연락망 정비 직원 뿐 아니라 파견·하청작업자에게 행동지침 등 전파
⑥ 사업장 내 확산 방지조치	추가적인 인력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장 내 확산 방지 조치사항 등 마련함.
⑦ 복구 등 사후조치	사업복구 절차를 마련하여 복구 시 혼선 최소화

### 제 3 장 신종감염병 위기경보 '주의' 단계

▶ '사업장 특성에 맞는 예방체계 마련'은 제2장('관심' 단계) 1번과 같음.

### 1. 위험성 평가

#### 1.1 위험성 평가

- (1) 신종감염병에 대한 사업장의 위험도 평가를 하고<표 4>, 이에 따른 사업장 특성을 반영하여 '위험성 평가'를 실시 후 점검한다<표 5>.
- (2) 전체 작업자 및 고객 및 방문객 간에 상호작용 위험요소 및 근무환경 오염을 평가한다<표 6>.
- (3) 전체 부서 및 작업 내용의 위험 지도를 작성한다.
- (4) 사업장에 고령, 만성질환자, 임산부 등 고위험군 혹은 일용직, 외국인 등 취약작업자가 있는지 관련 부서에 확인한다<표 5>.

<표 4> 사업장 내 방역위험도 자가 점검표

항목	질문	낮음	중간	높음
밀폐도	외부 공기로 환기가 원활한가?	상시 환기 (0점)	3회 이상/일 (1점)	불가 (2점)
밀집도	직원간 거리두기가 가능한가?	2m유지 (0점)	1m유지 (1점)	불가 (2점)
군집도	한 공간을 동시에 사용하는 직원 수는?	10명 미만 (0점)	10명-100명 (1점)	100명 이상 (2점)
활동도	침방울 발생 정도는?	거의 없음 (0점)	일상적 대화 (1점)	적극적 침방울 (2점) *예) 콜센터 등
고객 접촉	고객과 자주 직접 접촉하는 부서 혹은 작업자가 있는가?	거의 없음 (0점)	일부 있음 (1점)	다수 있음 (2점)
구내 식당	이용자 간 거리두기가 가능한가?	2m 혹은 가림막 (0점)	-	불가 (2점)
공동 숙소	공동숙소가 있는가?	없음 (0점)	-	있음 (2점)
관리 체계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방역지침을 마련하였는가?	작동 (0점)	-	미작동 (2점)

<sup>\*</sup> 위험도 종합 평가: 6점 이하(낮음), 7~9점(중간), 10점 이상(높음)

#### <표 5> 사업장 방역관리 점검표(위험성 평가표)

점검내용		점검결과	
		아니오	
1. 작업자 및 방문자는 마스크를 지속 착용하는가? (사업장 내, 셔틀버스 안, 휴게실 등)			
2. 매일 작업자(일용직 포함)의 체온측정 및 증상여부 확인하고 있는가? (증상: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등)			
3. 근무 중 발열, 기침 등이 나타나면 즉시 퇴근하여 감염병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는가?			
4. 출근하기 전 발열, 기침 등이 나타나면 출근하지 않고, 방역관리자에게 전화하여 안내를 받는가?			
5. 작업자 외 방문자의 출입명부 관리를 하는가?			
6. 손위생 시설(세수대와 비누) 또는 손소독제가 곳곳에 비치되어 있는가?			
7. 매일 3회 이상 자연환기 또는 상시 기계환기를 가동하는가?			
8. 자주 손이 닿는 곳(손잡이, 문고리, 팔걸이 등) 및 공용물품의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소독하는가?			
[해당 사업장] 보호용구(작업복, 안전모, 고글, 안면보호구, 장갑, 신발 등)를 개인별로 사용하거나 공용사용시 매 사용시마다 소독하는가?			
[고위험 작업자] 고령, 만성질환 작업자, 임산부가 있는 부서가 있는가?			
[취약 작업자] 일용직, 외국인 작업자가 많은 부서가 있는가?			

※ <표 4>와 <표 5> 출처: 「코로나19 대응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관리자 업무 안내」(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 사고수습본부, 2021)를 기본으로 「신종감염병 발생 사업장 대응체계 개선」(최은희 외, 2021)에서 수정한 것임.

#### <표 6> 밀폐 혹은 환기 구역 확인 방법

- 방역관리자는 사람들이 일하는 곳에 개방된 문, 창문, 통풍구가 있는지 확인한다.
- - \* 외부 공기 공급 시설(급기시설)이 있어야 한다.
- 방역관리자는 이산화탄소 수준을 확인한다.
  - \* 높은 경우 환기가 안 되는 것이다.
- 작업자는 답답하거나 나쁜 냄새가 나는지 확인한다.
  - \* 이러한 경우 환기가 안 되는 경우일 수 있다.



「코-숡」바로가기

※ 스마트 환기관리 평가도구(코-숨)를 보조적으로 활용하여 참고 가능(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www.kosha.or.kr)→사업소개→산업보건→스마트 환기관리 평가도구(코-숨))

H - 220 - 2023

### 2. 의심증상 모니터링 및 유증상자·확진환자 등 발생 관리

2.1 의심증상(발열·호흡기 증상) 모니터링 및 유증상자 발생 관리 작업자의 발열,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 유무, 해외 출입국 여부 등을 확인하여 유증상자에 대해서는 가까운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 방문하도록 조치한다.

#### 2.2 사업장 내 확진환자 발생 관리

- (1) 확진환자로 확인된 작업자는 출근 전 유선으로 방역관리자에게 보고 후 보건당국의 조치에 따른다.
- (2) 사업장에 확진환자가 발생 또는 방문한 경우(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작업자, 방문 고객 중 확진환자 발생)에는 확진환자의 복무관리자에게 통보 및 모든 작업자에게 발생·방문 사실을 즉시 알리고, 관련 정보의 고지가 필요한 경우 그 내용, 범위 등에 대해서는 보건당국의 지침,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하여 결정한다.

### 2.3 확진환자의 회복 후 업무복귀 관리

- (1) 확진환자의 회복·격리해제 후 업무 복귀 절차와 보수·휴가 관련 규정을 마련한다.
- (2) 유연근무제도, 병가, 유급휴가제도 등 아프면 쉴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안내한다.
- (3) 업무에 복귀한 작업자에 대한 불이익을 금지하고, 작업자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3. 위생 및 청결·소독 등 방역 관리

#### 3.1 방역물품 예산 확보

해당 사업장의 작업자를 신종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방역물품<표 7>을 구비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한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적용 가능한 사업장은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가능

#### <표 7> 방역물품

- 체온 측정할 수 있는 기계(체온기 등)
- 호흡기 마스크
-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가림막
- 소독제(손 소독제, 환경 소독제 등)

H - 220 - 2023

#### 3.2 교육 및 홍보

- (1)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작업자를 대상으로 교육한다.
- (가) 신종감염병 임상적 특성
- (나) 신종감염병 진단 방법과 치료
- (다) 개인방역 중요수칙
- (라) 집단방역 중요수칙
- (2) 사업장 내 다수가 볼 수 있는 곳에 홍보 안내문, 포스터 등을 부착하여 홍보한다.

#### <표 8> 홍보 안내문과 포스터 내용

- 보호구 선택 및 착용 방법에 관한 사항
- 개인위생 등 감염관리 지침에 관한 사항
- 노출 시 보고 등 노출과 감염 후 조치에 관한 사항

### 4. 유연근무 및 휴가

#### 4.1 유연근무 및 휴가

유연근무제<표 9> 및 휴가제도(병가, 연차휴가, 가족돌봄휴가 등)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한다.

- (1)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집중 이용으로 인한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차출 퇴근제를 활용한다.
- (2) 재택근무를 적극 활용하고 밀폐·밀집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은 방역수칙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가림막 설치 등)을 준수한다.
- (3) 유연근무제 및 휴가제도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이로 인한 업무·인사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한다.

#### <표 9> 유연근무제 주요 내용

- 시차출퇴근제: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 재택근무제: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해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제도
- 원격근무제: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

### 제 4 장 신종감염병 위기경보 '경계' 단계

- ▶ '사업장 특성에 맞는 예방체계 마련'은 제2장('관심' 단계) 1번과 같음.
- ▶ '위험성 평가, 확진자의 회복 후 업무복귀 관리, 방역물품 예산 확보, 유연근무 및 휴가'는 제3장('주의' 단계) 1, 2.3, 3.1, 4번과 같음.

### 1. 의심증상 모니터링 및 유증상자·확진환자 등 발생 관리

- 1.1 의심증상(발열·호흡기 증상) 모니터링
  - (1) 발열,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 여부를 확인한다.
  - (2) 발열 여부 확인을 위해 비접촉식 체온계, 열감지(열화상) 카메라 등을 활용한다.
  - (3) 접촉식 체온계를 활용하여 체온을 측정할 경우, 체온 측정 전·후에 손 소독한다.

#### 1.2 사업장 내 유증상자 발생 관리

작업자의 발열,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 유무를 확인하고 유증상자에 대해서는 가까운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 방문하여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유연근무제, 휴가 제도 등을 활용하여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 1.3 사업장 내 확진환자 발생 관리

- (1) 확진환자로 확인된 작업자는 출근 전 유선으로 방역관리자에게 확진상황을 보고 후 보건당국의 조치(격리 등)에 따른다.
  - \* 사업주는 확진환자가 보건당국의 조치(격리 등)를 준수하도록 관리한다
- (2) 사업장에 확진환자가 발생 또는 방문한 경우(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작업자, 방문 고객 중 확진환자 발생)에는 확진환자의 복무관리자에게 통보 및 모든 작업자에게 발생·방문 사실을 즉시 알리고, 관련 정보의 고지가 필요한 경우 그 내용, 범위 등에 대해서는 보건당국의 지침,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하여 결정한다.
- (3) 보건당국의 확진환자에 대한 역학조사에 협조한다.
- (4) 확진환자의 이동 동선, 소독 등 보건소의 조치 명령을 이행한다.

#### 2. 위생 및 청결·소독 등 방역 관리

#### 2.1 위생·청결 관리

(1) 손씻기와 관련하여 개수대를 충분히 확보하고 손세척제(비누 등), 손소독제, 일회용 수건, 화장지 등 위생관련 물품을 충분히 비치하여 작업자의 개인위생 실천을 유도한다.

#### H - 220 - 2023

- (2) 기침예절과 관련하여 시설 내 화장지를 비치하여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사용한 화장지를 바로 처리하는 쓰레기통을 곳곳에 비치한다.
- (3) 보호구 및 위생관련 물품의 부족 또는 공급혼선에 대비하여 사전에 물품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 2.2 교육 및 홍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작업자를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한다.

- (가)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등을 만진 후와 식사 전에는 수시로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를 사용한다.
- (나)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화장지,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린다.
- (다) 침방울이 튀는 행위(큰소리로 대화, 불필요한 대화, 통화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을 자제한다.
- (라) 구내식당 이용 시 집기 사용전후 손 소독제를 사용하며, 음식은 각자 개인 접시에 덜어 먹는다. 대화를 자제하고 식사 중 외에는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한다.
- (마) 식기, 컵, 티스푼 등은 함께 사용하지 않고 개인별로 사용한다.
- (바) 사업장 내 청결을 유지한다.

#### 2.3 환기관리

- (1) 1일 3회 이상(회당 10분 이상) 환기하고, 가능하면 창문을 열어 자연 환기한다.
- (2) 기계환기설비가 있을 경우 외부공기 도입량을 늘린다.

### 3. 회의·교육, 출장·모임 등 관리

#### 3.1 회의·교육

- (1) 대면회의(교육)를 할 경우에는 환기가 원활하고 충분한 간격을 확보할 수 있는 회의 공간을 마련한다.
- (2) 회의 인원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여 회의 시간을 단축한다.
- (3) 개최자(또는 사회자)는 회의 시작 전에 참석자의 발열,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 등을 확인하고 유증상자의 회의 참석을 자제시킨다.
- (4) 회의실 곳곳에 손소독제를 비치하여 참석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한다.
- (5) 1시간 간격으로 휴식 시간을 가지며, 회의 장소의 문과 창문을 열어 환기한다.
- (6) 참석자 전원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하고, 발언 시에도 마스크를 계속 착용한다.

#### 3.2 출장·모임

(1) 출장은 가급적 줄이며, 출장인원·소요시간·경로를 최소화한다.

H - 220 - 2023

- (2) 발열 및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는 경우 출장을 연기하고, 출장 중인 경우 출장을 중단하고 가까운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진료받고 쉰다.
- (3) 공용·개인 차량 이동 시 동승자가 있는 경우 탑승자 모두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 하며, 대화를 자제한다.
- (4) 가급적 환기가 원활하고 사람이 밀집되지 않은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한다.
- (5) 출장 업무 외 소규모 모임, 회식 등 다수가 밀집된 공간 및 다중이용시설 등의 방문을 자제하고 일찍 귀가한다.

### 4. 사무공간 및 구내식당·휴게실 등 관리

#### 4.1 사무공간

- (1) 개인별 고정 근무자리 배치, 사무실 내 유휴공간 활용, 사무환경 개선 등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밀집을 최소화한다.
- (2) 책상 간 간격, 작업자 간 간격을 최소 1m 이상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거나 가급적 가림막을 설치한다.

### 4.2 휴게공간

실내 휴게실, 탈의실, 흡연실, 다기능 활동공간 등 다중 이용공간은 혼잡한 시간을 피해 이용하도록 지도한다.

#### 4.3 구내식당

- (1) 구내식당은 최소 1m의 거리를 유지하거나 가급적 가림막을 설치한다.
- (2) 점심시간 시차제를 운영한다.
- (3) 손소독제를 비치하고 공용집게, 접시, 수저 등의 사용 전후에 사용한다.
- (4) 대화를 자제하고, 식사 시간 외에는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한다.

H - 220 - 2023

### 제 5 장 신종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

- ▶ '사업장 특성에 맞는 예방체계 마련'은 제2장('관심' 단계) 1번과 같음.
- ▶ '위험성 평가, 방역물품 예산 확보, 유연근무 및 휴가'는 제3장('주의' 단계) 1, 3.1, 4번과 같음.
- ▶ '사업장 내 의심증상 모니터링, 확진환자 관리, 위생·청결 관리, 환기관리'는 제4장 ('경계' 단계) 1.1, 1.3, 2.1, 2.3번과 같음.

#### 1. 의심증상 모니터링 및 유증상자·확진환자 등 발생 관리

#### 1.1 사업장 내 유증상자 발생 관리

- (1) 출근 전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는 작업자에 대해 서는 유연근무제, 휴가제도 등을 활용하여 출근하지 않도록 한다.
- (2) 근무 중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는 작업자는 방역 관리자에게 증상을 알리고 방역관리자는 해당 작업자에게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시킨 후 사업장 상황과 특성을 반영하여 격리장소로 이동시킨다.
- (3) 질병관리청 콜센터 또는 관할 보건소와 협의하여 보건당국의 조치에 따른다.
- (4) 보건당국의 특별한 조치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 작업자를 마스크 착용 상태에서 즉시 귀가시키고 발열 등 이상소견이 있는 기간 동안 출근하지 않도록 한다.

#### 1.2 접촉자 발생 관리

다음과 같이 확진환자와 접촉한 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유증상자, 확진환자 등으로 확인될 경우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한다.

<표 10> 접촉자 조사·관리 대상 우선순위

우선순위	접촉자 조사·관리 대상			
1순위	■ 확진자와 동일 공간(기숙사 또는 숙소)에서 생활하는 구성원			
2순위	확진자의 증상 발생일(무증상자는 검체 채취일) 2일 전부터 확진일 동안  ■ 확진자와 함께 식사 이상의 접촉력이 있는 경우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15분 이상 대화한 경우			
3순위	■ 동일 공간(부서)에서 근무하는 구성원 * 방역수칙 준수 하 회의 참석자는 3순위에서 제외			

H - 220 - 2023

#### 1.3 확진환자의 회복 후 업무복귀 관리

사업주는 확진환자의 격리해체 후 업무 복귀 시 주의기간\*을 설정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출근하도록 안내 및 관리한다.

\* 격리 이후 출근은 가능하지만 방역수칙 준수 집중관리가 필요한 기간(예. 코로나19는 3일을 설정하여 관리)

### 2. 위생 및 청결·소독 등 방역 관리

#### 2.1 물품 관리

- (1) 사업장 내 작업자의 위생관리에 필요한 보호구 및 위생 물품을 사업장 상황에 맞게 지급·비치하거나 구입을 지원한다.
- (2) 보호구(안전모 등), 장비 등 작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물품이 청결하게 유지되도록 관리계획을 수립 및 이행한다.

#### 2.2 교육 및 홍보

- (1) 고객을 대상으로 개인위생 실천방안을 홍보한다.
  - (가) 사업장 내 전파 방지를 위해 작업자 및 고객(방문객) 대상으로 기본적인 개인 위생 실천방안(손 씻기, 기침 에티켓 등)을 홍보\*한다.
    - \* (감염병 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 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제시하고 있다.
  - (나) 사업장, 영업소 등의 다수가 볼 수 있는 곳에 홍보 안내문, 포스터 등을 부착 하여 홍보한다.
- (2) 다음과 같은 행위에 대해 작업자를 대상으로 교육한다.
  - (가) 책상, 의자, 사무기기(마우스·키보드 등), 문손잡이, 스위치(버튼), 난간 등을 주기적으로 소독한다.
  - (나) 작업장, 사무실, 휴게실, 화장실, 출입구, 엘리베이터, 복도 등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은 주기적으로 소독 및 환기를 한다.
  - (다) 사적모임 자체, 감염취약시설·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등 대면접촉을 줄인다.

#### 2.3 환경관리

- (1) 사무공간의 책상, 의자, 사무기기(마우스, 키보드 등), 문손잡이, 스위치(버튼), 난간 등을 주기적으로 소독한다.
- (2) 작업장, 사무실, 휴게실, 화장실, 출입구, 엘리베이터, 복도 등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을 주기적으로 소독 및 환기를 한다.
- (3) 사업장이 운영하는 기숙사, 실내 휴게실 등이 있는 경우 가구, 비품, 침구, 수건 등을 청결히 관리한다.

H - 220 - 2023

### 3. 회의·교육, 출장·모임 등 관리

#### 3.1 회의·교육

회의·교육은 온라인 또는 영상으로 실시하며 불가피하게 대면으로 실시할 경우에는 방역수칙(발열여부 확인,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및 참석자 간 거리두기 유지, 유증상자 참석 제한) 및 정부 조치 기준을 준수한다.

#### 3.2 출장·모임

- (1) 출장은 최소한으로 실시하되, 대중교통으로 이동 시 마스크 착용 및 기침 예절을 준수한다.
- (2) 국외 출장의 경우 외교부에서 발령하는 여행경보지침을 준수하며, 해외출장을 다녀 오는 작업자의 관리를 강화한다.
- (3) 출장 대상 작업자에게는 개인위생수칙 및 다중 밀집장소 방문 시의 유의사항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한다.
- (4) 소규모 모임, 사내 동아리 활용 회식, 비필수적인 모임 등은 가급적 자제하고 퇴근 후 일찍 귀가하는 문화를 형성한다.

### 4. 사무공간 및 구내식당·휴게실 등 관리

#### 4.1 사무공간

- (1) 책상 간 간격, 작업자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되, 간격 조절이 어려운 경우, 모니터·컴퓨터·책상·작업대 위치 및 방향을 조정하거나 유휴 공간을 활용하다.
- (2) 좁은 공간에 작업자들이 밀집해 있는 사업장(콜센터 등)은 작업자 간 투명 가림막을 설치한다.
- (3) 간격 조절이 어려운 경우 우선적으로 보호구를 지급한다.

#### 4.2 휴게공간

실내 휴게실, 탈의실, 흡연실, 다기능 활동공간 등 다중 이용공간이라도 여러 명이 함께 이용하지 않고, 불가피하게 이용 시 마스크를 상시 착용, 다른 사람과의 대화 자제 등 접촉을 최소화한다.

#### 4.3 구내식당

- (1) 구내식당은 투명 가림막 설치, 식탁좌석 일렬·교차 배치, 개인 간 거리를 유지한다.
- (2) 대유행 시에는 식사 중 대화를 제한한다.
- (3)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을 비치하고 공용집게, 접시, 수저 등의 사용 전후에 사용한다.

H - 220 - 2023

예시1	식사①	식사②	식사③	식사④
	21.11.60		21.11	
예시2	식사(1)		식사③	
", ", "		식사②		식사④

[그림 1] 식탁좌석 배치

### 4.4 기숙사

- (1) 방역수칙을 게시하고 방문자(외부인) 및 입·퇴소자를 관리한다.
- (2) 가급적 1인 1실을 사용한다(사업장 상황에 맞게 권고 적용).

### 4.5 기타사항(외부 방문자 관리)

- (1) 사업장에 외부 방문자가 출입하는 경우 출입명부를 작성한다.
- (2) 외부 방문자의 체온, 감염 증상 등을 확인한다.